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사하구 행정기구표의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장 직인의 명칭을 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명칭을 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항제3호)

나. 전자이미지공인의 효율적으로 관리(안 제2조의2 신설, 제4조, 제5조, 제6조 단서 신설, 제8조 제3항·제4항 신설)

3. 관계법령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사무관리규정(2002.12.26 대통령령 제17811호) 및 사무관리시행규칙(2003.7.14 행정자치부령)

4. 검토의견

사하구의 행정기구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개정에 따라 직인명칭 변경과 공인의 등록사항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서

- 기존의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직인을 『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등록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하구 직제개편 및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
- 우리구 의회에서 사용중인 공인중 대외적 발신공문서에 날인하여 사용하던 일반인영과 공공기관 등 전산망이 연결되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인영을 각각 분리하여 대장에 등록·관리·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전자이미지 인영 경우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단서 조항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실제 시행 사용되어 온지가 오래되어 왔으나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인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